

의안번호	제 691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 (2021.01.01.)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기구 신설 :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(안 제6장)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직제조정 (안 제25조제2항)
  - 곤충종자보급센터(과) → 곤충종자산업연구소(특화작목시험장)
-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명칭변경 (안 제25조제2항)
  - 포도연구소 → 포도다래연구소
  - 마늘연구소 → 마늘양파연구소
  - 수박연구소 → 수박딸기연구소
  - 대추연구소 → 대추호두연구소

## 3. 의안전문 : 불 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5조”를 “제116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사업소장·출장소장”을 “사업소장·출장소장·합의제행정기관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를 “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”를 “곤충종자산업연구소, 포도다래연구소, 마늘양파연구소, 수박딸기연구소, 대추호두연구소”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”를 “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63조를 제65조로 하고, 제63조 및 제6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4조(사무국) ① 자치경찰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5조(종전의 제63조)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공무원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를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출장소”를 “출장소,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

③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출장소”를 “출장소,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6호 중 “사업소 또는 출장소”를 “사업소, 출장소 또는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“출장소”를 “출장소,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일반행정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반행정 분과	기획관리실 (정책기획관)	의회사무처, 공보관, 감사관, 자치경찰위원회, 기획관리실, 행정국, 충북도립대학교, 자치연수원, 서울세종본부, 북부출장소, 남부출장소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

⑦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실·국·본부·원장·사업소장 및 출장소장”을 “실·국·본부·원장·사업소장·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장”으로 한다.

⑧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사업소”를 “사업소,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곤충종자산업연구소	청주시 관내
포도다래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양파연구소	단양군 관내
수박딸기연구소	음성군 관내
대추호두연구소	보은군 관내
와인연구소	영동군 관내
유기농업연구소	괴산군 관내



략)

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, 와인연구소,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.

③ (생략)

제6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 
<신설>

<신설>

과 같음)

② -----  
---- 곤충종자산업연구소, 포도다래연구소, 마늘양파연구소, 수박딸기연구소, 대추호두연구소-----  
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 
제63조(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자치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 
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 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4조(사무국) ① 자치경찰위원



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
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 
사무국장을 둔다

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  
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  
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  
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<신 설>

제63조 (생략)

제7장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

제65조 (현행 제63조와 같음)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【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18조 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

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제24조 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
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
4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행 등의 개선

5.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
  6.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·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,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
  7.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
  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
  9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
  10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
  11.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·사고 및 현안의 점검
  1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  1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·조정
  14.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·명령에 관한 사무
  15.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
  16.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·조정 요청
  17. 그 밖에 시·도지사, 시·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
- 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·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7조 (사무기구)**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.

② ~ ③ 생략

④ 사무기구의 조직·정원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